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성균관법학』 10.17008/skklr.2023.35.3.001
제35권 제3호(2023. 9.)
Sungkyunkwan Law Review Vol.35. No.3 (September 2023) pp. 1 - 34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 여부 검토

- 헌법재판소 판례의 법리를 기초로 하여 -

이황희* **

【목 차】

Ⅰ. 서론
1. 논의 배경
2. 쟁점의 정리
Ⅱ. 책임주의
1. 쟁점
2. 책임 없는 형벌?
3.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성
Ⅲ. 평등원칙
1. 쟁점
2. 구체적 검토
Ⅳ. 명확성 원칙
1. 쟁점
2.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내용
3. 기준으로서의 치료 기간
Ⅴ. 결론

【국 문 요 약】

그간 수많은 안전사고를 겪어 온 우리 사회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 등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했다. 이 법에 대해서는 지지와 비판이 교차해 왔는데, 특히 그 비판 중에는 이 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들도 있었다.

본 논문은 이 법에 대한 비판적 주장 중에서 특히 위헌론 주장의 당부를 검토하기 위한 목적에서 착안되었다. 위헌론 주장에 대한 검토는 지금까지 형성된 헌법재판소의 법리와 그것이 개별 사례에서 적용되어 온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 이 글은 필자가 2022. 4. 21. 한국헌법학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 등이 주최한 '새정부 법조 공약 평가 토론회' 및 2023. 7. 6. 한국공법학회 보건안전법연구포럼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특히 이 글은 명확성 원칙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과 관련하여 위 2022. 4. 21.자 발표에서 제시한 의견을 일부 변경하였다.

구체적 판단들을 기초로 수행되었다.

먼저 책임주의와 관련하여,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를 정하는 데에는 입법자의 재량이 폭넓게 인정된다. 이 법은 벌금형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 징역형도 1년 이상으로 되어 있어 하한이 과도하게 높지 않아 법관이 죄질의 경중이나 책임, 비난가능성을 살펴서 그에 부합하는 형벌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또한, 이 법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및 보건조치의무는 그 내용과 성격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이 법의 의무위반을 더 중하게 처벌한다고 해서 이것이 반드시 평등원칙에 반하는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명확성 원칙이 문제되는데, 이 법이 일정부분 추상적인 내용으로 규율되어 있다 해도 지금껏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조항들과 비교하면 그 정도로 불명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뿐 아니라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통해 그 의미를 구체화할 수 있는 점, 이 법의 수범자는 일반국민이 아닌 특정 집단으로 한정되어 있는 점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이 법의 규정들이 위헌이라고 볼 만큼 불명확하지는 않다.

이처럼 이 법에 관하여 제기되는 여러 위헌론이 있지만, 그간 축적된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비추어 검토해 보았을 때 이 법이 합헌성의 경계를 유월해 위헌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Ⅰ. 서론

1. 논의 배경

우리 사회는 그간 수많은 대형안전사고를 겪었다. 그때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 그러함에도 또 다른 안전사고와 재해가 이어졌다. 국회가 2021. 1. 26. 제정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약칭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발생을 억제하거나 줄이기 위한 또 다른 노력의 소산이다. 이 법은 중대재해의 원인을 단순히 현장

에서 발생한 근로자 개인의 규정 위반이나 현장소장 등의 잘못에서 찾는 접근을 넘어, 기업 시스템 차원의 문제로 이해한다.[1]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을 갖는 자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의무 등을 부과하고 그 위반행위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은 그 때문이다.

이 법에 대해서는 지지와 비판이 교차한다. 중대재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 법은 실효성이 미흡하거나 그로 인한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비관적 예측도 만만치 않다. 비관적 예측은 노동자 측과 기업 측 모두에서 제기된다. 노동계는 5인 미만 사업장이 이 법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됨으로써 이 법의 취지가 반감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그러나 더욱 거센 비판은 이 법으로 의무를 부여받고 그 위반행위로 처벌될 가능성이 생긴 기업 측으로부터 분출하고 있다. 이 법이 의무의 내용을 포괄적이고 모호하게 규정하면서도 가혹한 엄벌주의로 일관해 기업경영을 위축시키는 등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이다.

이처럼 중대재해처벌법은 실효성이나 부작용을 둘러싼 정책적 공방을 비롯해 여러 측면에서 비판받고 있는데, 그중에는 위헌성을 제기하는 주장도 있다.[2] 본 논문은 이 법에 대한 비판적 주장 중에서 특히 위헌론 주장의 당부에 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검토는 '위헌 여부'의 문제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이 법의 '타당성'에 관한 정책적 논의와는 성

---

1)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목적과 경위, 제정 경과에 관해서는 법무법인(유한) 바른, 중대재해처벌법 연구, 법문사, 2022, 3-29쪽. 이 법의 모델이 되었던 영국의 법인과실치사법에 대한 설명은 정진우, 중대재해처벌법, 중앙경제, 2022, 제2장 참조.

2) 위헌문제를 제기하는 문헌으로, 송인택 외 4인,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박영사, 2021, 70쪽 이하; 법무법인(유한) 바른, 앞의 책, 33쪽; 정진우, 앞의 책, 5쪽 이하, 325쪽 이하; 송지용,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 검토",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74호, 대검찰청, 2022, 231쪽 이하; 한석훈, "중대재해처벌법의 쟁점에 관한 소고 - 중대산업재해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법조 제71권 제4호, 통권 제754호, 법조협회, 2022. 이와 달리 이 법의 전반적인 합헌성을 주장하는 문헌으로 황동혁,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헌법적 고찰", 법학연구 제63권 제2호, 통권 112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김민기, "중대재해처벌법의 합헌성", 권창영 외, 중대재해처벌법 연구Ⅰ, 법문사, 2022; 권오성, "중대재해처벌법 과연 위헌인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평가와 과제 토론회 자료집, 2023; 이영주·이승길,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 여부에 관한 소고", 사회법연구 제49호, 한국사회법학회, 2023.

격이 다르다. 그리고 본 논문이 위헌 여부에 관한 쟁점을 검토할 때 활용하는 판단의 기준은 지금껏 형성된 헌법재판소의 법리와 그것이 개별 사례에서 적용되어 온 구체적 양상들이다. 물론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절대적인 진리일 수는 없고, 더군다나 헌법재판소는 판례 변경에 개방되어 있으므로 종래 입장이 앞으로도 불변적일 것이라고 단언할 수도 없다. 나아가 판례의 태도와는 별개로 이 법의 위헌 여부를 검토하는 방식 역시 가능하며, 이런 시도를 부정적으로 보아야 할 이유도 없다. 그러나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 여부 문제를 검토하고자 할 때, 해당 쟁점에 관한 그간 확립된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가장 유력하게 참조할 만한 자료인 것도 분명하다. 우리 사회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한 가장 권위 있는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몫이고, 향후 이 법의 위헌 여부 역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될 것임은 많은 이들이 예상하는 바이므로,[3] 그간의 헌법재판소 판례를 토대로 그 위헌 여부 문제를 검토하는 시도는 현 시점에서 충분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법리를 평가의 척도로 삼는다면, 현재 제기되는 여러 위헌론 주장들의 실무적 성공가능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실익도 있을 것이다.

2. 쟁점의 정리

이 법에서 말하는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된다. 그러나 현재 이 법의 위헌 여부가 논의되는 지점은 주로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부분이므로, 본 논문도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부분을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에 관하여 제기되는 주요 위헌론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책임주의 위반 여부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편으로 경영책임자 등에[4] 대하여 일률적으로 중대재해 발생의 책임을 묻는 것 혹은 법인에

3)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제1호 사건에서 피고인 측은 재판의 전제가 된 일부 조항(제4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2항)에 관하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권오성, 앞의 논문(2023), 25쪽 참조.

4)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여하고 그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처벌한다. 이 중 주로 문제로 지적된 것은 경영책임

책임을 묻는 것이 책임주의에 위반되는지가 문제가 되고, 다른 한편으로 이 법상 처벌조항의 형량이 지나치게 높아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는지도 문제가 된다.

둘째는 평등원칙 위반 여부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편으로는, 이 법의 처벌조항이 정한 법정형이 다른 법률과 비교할 때 형벌의 체계정당성을 위반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다른 한편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규정들을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 적용하지 않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가 문제로 제기한다.

셋째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위반 여부이다. 이 법이 경영책임자등에게 부과하고 있는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내용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며, 특히 이러한 의무는 그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조항과 결합해 형벌부과의 근거로 기능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으로서 명확성 원칙의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된다. 이하에서 이 문제들을 차례대로 살펴본다.

Ⅱ. 책임주의

1. 쟁점

형벌에 적용되는 헌법상 책임주의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형벌은 책임이 있는 자에게 부과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형벌은 책임에 비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5] 양자는 헌법적 근거에서 차이가 있는데, '책임 없이는 형벌 없다'라는 전자의 원리는 헌법 제10조를 바탕으로 하지만,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성'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근거를 둔다. 이 법과 관련해서는 책임주의의 두 측면이 모두 문제로 제기된다. 전자에 관해서는 경영책임자등과 법인에 대한 처벌이 책임주의에 반하는지가, 후자와 관련해서는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처벌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는지가 논의된다.

자등에 관한 부분이므로, 이하에서는 경영책임자등을 중심으로 서술한다.

5) 헌재 2007. 7. 26. 2006헌바12; 헌재 2009. 2. 26. 2008헌바9; 헌재 2013. 12. 26. 2010헌가90 등.

2. 책임 없는 형벌?

가.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처벌

1)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처벌이 책임 없는 형벌인지에 관하여 본다. 통상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위반으로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죄(이하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라고 함)는 결과적 가중범과 유사한 성격을 띤다고 설명된다.[6]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결과적 가중범과 유사한 구조로서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이 법이 규정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대한 위반이 존재해야 하고, 그에 관한 고의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로 인해 중대재해라는 결과가 발생해야 하고, 그 같은 결과 발생에 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법이 정한 의무를 위반한 행위와 중대재해의 발생이라는 결과 간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7] 경영책임자등은 이와 같은 요건들이 모두 충족될 때 그에 대한 책임이 발생하며 비로소 처벌될 수 있다. 의무위반이 있더라도 고의가 없거나, 고의가 있더라도 그로 인해 중대재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거나, 중대재해의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그러한 결과 발생에 관한 예견가능성이 없거나, 그 같은 예견가능성이 있더라도 의무위반과 결과 발생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경영책임자등은 처벌되지 않는다.[8]

특히 인과관계 문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단계에서부터 뜨겁게 논의되어 온 주제였다. 이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 측에서는 인과관계의 입증이 쉽지 않으리라고 우려한 까닭에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조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법이 현실적으로 힘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관측했다.[9] 반면, 그와 같은 인과관계 추정이 무죄추정

---

6) 권오성, 중대재해처벌법의 체계, 도서출판 새빛, 2022, 181쪽(다만, 이 법에는 제4조, 제5조 위반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결과적 가중범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본다. 같은 쪽의 주 72); 고용노동부, 해설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2021, 112쪽. 이는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현행법 제167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위반죄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과 다르지 않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874 판결 등).

7) 고용노동부, 앞의 책, 112쪽; 정진우, 앞의 책, 47-48쪽.

8) 구성요건에 대한 설명은 법무법인(유한) 바른, 앞의 책, 98-101쪽; 권오성, 앞의 책(2022), 178쪽 이하 참조.

원칙이라는 형사법의 근본을 훼손하고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되었다. 결과적으로 입법자는 위헌론을 의식했기 때문인지 인과관계 추정조항을 배제한 형태로 이 법을 제정했다. 따라서 이 법에 의한 범죄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은 형사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검사의 입증책임을 전제로 이루어질 것이다.

2) 사업장에서 현장을 직접 지휘·감독하지 않는 경영책임자등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책임주의에 반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이 법은, 안전사고 등을 단지 일선 근로자의 부주의나 현장감독자의 의무 위반 차원으로 접근하는 사고에서 벗어나, 기업 차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그 이행의 보장, 기업 주도적인 안전대책 마련, 안전의식의 조직적 고취, 안전을 우선하는 업무 문화 형성 같은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차원의 과제로 다루어야 한다는 관념에 바탕하고 있다. 물론 산업안전보건법의 경우에도 사업주에게[10] 안전조치와 보건조치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고(제38조, 제39조),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한다(제167조, 제168조). 그러나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이 사업주이며, 안전관리책임은 대체로 현장의 실무자 등에게 위임되어 있어 경영책임자등은 처벌받는 경우가 드물었다.[11] 이와 달리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차원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그에 관한 업무를 실질적으로 결정할 권한을 가진 경영책임자등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 바로 이것이 이 법에 담긴 입법자의 인식이며, 이 법이 경영책임자

9) 박주민 의원과 이탄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대표적이다. 이들 안은, 당해 사고 이전 5년간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무와 관련된 법을 위반한 사실이 수사기관 또는 관련 행정청에 의해 3회 이상 확인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당해 사고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현장을 훼손하는 등 사고 원인 규명, 진상조사, 수사 등을 방해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지시 또는 방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었다(제5조). 현행법상 인과관계 추정조항의 부재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다소 완화된 추정이나마 인과관계 추정에 관한 조항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로는 김재윤, "중대재해처벌법상 치사상죄 처벌의 허점(legal loophole)인가?에 대한 토론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의 수사와 법 적용에서 쟁점,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형사법센터 세미나, 2022, 82-84쪽.

10)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이다(제2조 제4호).

11) 권오성, 앞의 책(2022), 173쪽.

등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그 이행에 관한 조치 같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 역시 그 때문이다. 따라서 경영책임자등은 중대재해의 발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무과실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행해야 할 의무의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다. 의무 위반의 범위가 확대된다면 사실상 무과실책임에 근접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을 수 있으나, 이 우려는 그 의무이행의 요구수준이나 구성요건의 성립을 죄형법정주의의 취지에 맞게,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 엄격히 심사해 인정함으로써 해소될 수 있다.

이 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내용들이 다소 포괄적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는 그 속성상 일정 부분 포괄적 방식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다양하게 요구되는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일일이 서술하는 것은 입법 기술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측면이 있으며, 그 과정에서 오히려 의무의 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는 까닭이다. 또한, 법은 불가능한 것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이들 의무는 법 해석을 통해 실현 가능성이 있는 합리적 범위에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법리 또한 이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있다. 가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옥외집회를 주최하려는 자가 그 집회를 시작하기 48시간 전까지 집회의 일시, 장소 등에 관한 정보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신고 의무가 집회의 성격상 48시간 안에 신고할 수 없는 이른바 '긴급집회'에 대해서는 그대로 적용되기 힘들다는 것이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 같은 문제와 관련하여 48시간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는 법의 문언상 의무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신고 가능성이 존재하는 즉시 신고하면 된다는 의미로 축소하여 해석함으로써 법은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재확인하였다.[12] 이러한 법 해석 방식에 따를 때, 이 법은 경영책임자등에게 불가능한 혹은 실현해 내기 현저히 어려운 수준을 요구할 수 없으며, 그 이상의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수단이 되어서도 안 된다.

12) 헌재 2014. 1. 28. 2011헌바174등.

3) 경영책임자등이 복수로 존재하고 그들 간에 업무의 분담이 이루어져 있는 경우에는 그들 간의 책임 소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만약 경영책임자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다면, 본인이 실질적으로 책임지지 않는 업무에서 재해가 발생한 때에도 일률적으로 처벌될 것인데, 이러한 처벌은 책임주의에 위반될 여지가 있다.[13] 그러나 이 문제는 법률해석을 통해 적절한 범위의 대상을 설정함으로써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복수의 경영책임자등이 존재한다면, 그들 가운데 해당 조치에 관하여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갖는 자에게 그 책임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복수의 대표이사가 있는 회사의 경우 직무, 책임과 권한,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에서 최종 경영책임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고용노동부의 해설서도 같은 견해를 취한다.[14]

4) 한편,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는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도 유효하며, 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도 처벌 사유가 된다(제5조, 제6조). 이것이 자신과 무관한 제3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인지도 문제가 되는데, 이 법 제5조 단서는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그 책임이 궁극적으로 자신의 행위에 대한 것임을 표현하고 있다.

나. 법인에 대한 처벌

법인에 관한 양벌조항이 법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있다. 이 법 제7조는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같은 조항에서 법인 또는 기관이 그러한 위

13) 김장식, “중대산업재해로 인한 형사책임”, 월간노동법률 제358호, 2021. 3.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6&gopage=1&bi_pidx=31943).

14) 고용노동부, 앞의 책, 24쪽.

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때에는 그렇지 않다고 함께 규정하고 있다. 이는 결과 발생에 관하여 고유한 책임이 없는 법인은 형벌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이 법의 양벌조항은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것은 헌법재판소가 여러 판례에서 활용해 온 법리이다. 예컨대, 헌법재판소는 위와 같은 논리에 따라 불법의 결과 발생에 관하여 독립적인 책임이 없는 법인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봄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관한 양벌조항이 헌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15]

3.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성

가. 책임과 형벌 간의 관계

이 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 대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고(제4조, 제5조), 이를 위반하여 사망자가 발생한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을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일정한 부상자나 질병자가 발생한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그리고 해당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해당 죄를 저지른 때에는 해당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한다. 이와 관련하여, 형벌이 지나치게 중하여 책임과 형벌의 비례성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있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어떤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그것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즉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를 선택하는 문제는 그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 그 사회의 역사와 문화, 입법 당시의 상황, 사회에서 공유된 가치관, 형사정책적인 고려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이다.[16] 따라서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를 선택하는 데에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된다. 법정형이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아 형벌의 기능과 목적에 필요한 정도를 일탈

15) 헌재 2017. 10. 26. 2017헌바166. 같은 입장으로, 헌재 2018. 1. 25. 2016헌바201등;
16) 헌재 2006. 6. 29. 2006헌가7; 헌재 2011. 11. 24. 2010헌바472 등.

하지 않는 이상으로써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한 법정형을 어떻게 정하는가는 입법자에게 맡겨진 몫이다. 말하자면, 이 문제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기본적으로 입법재량의 폭을 넓게 인정하는 관점을 취하고 있다.

나. 구체적 검토

1) 이상의 기준에 따를 때, 이 법상 처벌조항의 형량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될 정도라고 보이지 않는다.

통상 헌법재판소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시하는 부분은, 법관이 범죄자의 책임에 합당한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정형의 범위가 설정되어 있는가이다. 예컨대, 같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죄질의 경중이나 행위의 위험성 혹은 비난가능성은 다를 수 있다. 입법자는 이를 고려해 법정형의 범위를 정해야 하지만, 그 법정형이 높아 비교적 가벼운 범행에 대해서까지 과도한 형벌을 선고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면 이는 책임에 비례하는 형벌이라고 말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따라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위반 여부를 심사할 때, 주로 법정형의 하한선이 해당 범죄의 비교적 가벼운 죄질에 합당한 형벌을 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지, 몰수·추징이 필요적으로 규정되어 행위의 불법성이나 책임이 크지 않은 경우에까지 반드시 몰수·추징을 해야 하도록 만드는지 등에 초점을 두어 왔다.

이 법상 처벌조항은 일단 벌금형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 징역형도 1년 이상으로 되어 있어 하한이 과도하게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관은 죄질의 경중이나 책임, 비난 가능성을 살펴서 가벼운 형벌인 벌금형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필요한 때에는 징역형을 선택하되 감경할 수도 있으며,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법정형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된 사안들을 보면,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7년 이상,[17] 10년 이상,[18] 징역 20년 이상,[19] 사형인[20] 경우들이 주를 이루었다. 물론 이러한 형량이 어떤 죄에 대한 것

17) 헌재 2023. 2. 23. 2021헌가9등.

18) 헌재 2009. 2. 26. 2008헌바9등; 헌재 2006. 4. 27. 2006헌가5.

19) 헌재 2008. 12. 26. 2007헌가10등.

인지를 함께 고려해야 하겠으나, 기본적으로 이들 사건은 법정형의 하한이 지나치게 높아 죄질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사안에서 그에 합당한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문제, 특히 다른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으면 일률적으로 징역 3년을 넘는 중형에 처해야 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이 법은 벌금형이 존재하고 법정형의 하한이 낮아 법관이 죄질의 경중을 고려해 그 책임에 맞는 형량을 결정하는 데 큰 장애가 존재하지 않는다.

2) 그러나 이것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위반 여부를 심사할 때 법정형의 상한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법정형은 상한과 하한이 모두 중요하고, 비록 법관에게 양형에 관한 재량이 인정된다 해도 그것은 법정형의 상한과 하한이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정해져 있을 때 의미가 있다. 이러한 논리로, 헌법재판소는 반국가적 범죄를 반복해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범한 죄가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등죄 같은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서까지도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에 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했다.[21]

반면에, 이 법 제6조에 따른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가 결과적 가중범과 유사한 구조를 지닌다는 것은 전술한 대로인바, 중대재해라는 결과 발생이 필요한 구성요건적 특성상 그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어느 정도로 확대될 것인지를 정확히 알기는 힘들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법을 제정할 때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규모의 피해 결과에 대해서까지 대비할 수 있게 만들어 둘 필요가 있다는 입법자의 인식에는 합리적 근거가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죄의 경우 "대규모 인명피해와 직결될 수 있는 필수적 안전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양형에서 비중 있게 고려되어야 할 요소이며, 그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는 형의 가중 요소로 설명된다.[22] 즉 대규모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안전의무 위반의 '정도'와 '성격'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 '규

20) 헌재 2007. 11. 29. 2006헌가13.

21) 헌재 2002. 11. 28. 2002헌가5.

22) 대법원 양형위원회, 2021년 양형기준, 2021, 565쪽, 569쪽.

모'에 관한 문제도 기실 그 반(反)가치의 상한이 어느 정도일지 미리 산정하기가 쉽지 않다. 이 법상 처벌조항의 상한을 비교적 높게 설정할 필요성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측면 때문이다.[23]

3) 법정형의 상한이 높다는 사실이 필연적으로 법관에게 높은 형량의 선고를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법관은 법정형의 상한이 높아도 충분한 합당한 하한이 보장되어 있다면 해당 범죄의 죄질에 맞는 형량을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양형으로 불법과 책임을 일치시킬 수 있으면 법정형이 내포하고 있는 약간의 위헌성은 극복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보면서, 법정형의 하한이 '5년 이상의 징역'이라고 해도 작량감경 사유가 존재한다면 집행유예도 선고할 수 있으므로 법관의 양형을 통하여 그 불법의 정도에 알맞은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형을 선고할 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24] 이는, 설사 이 법상 처벌조항의 법정형 수위가 다소 높아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는 법관의 양형 판단을 통해 충분히 해소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4)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 이후 이 법에 따른 수사와 기소,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법원의 판결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이 법에 따른 처벌이 어느 수위로 이루어질 것인지 확언하기는 쉽지 않다. 일각에서는 이 법에 의해 과잉 처벌사례가 양산되리라는 부정적 예측을 선보이기도 한다.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형벌은 책임에 비례하여 부과되어야 하며, 일시적인 여론의 흐름이나 순간적인 증오 감정에 따라 좌우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다만, 한 가지 덧붙이고자 하는 것은, 설령 이 법의 적용 과정에서 과잉된 처벌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 법 자체에서 기인한 문제인지, 아니면 이 법을 해석·적용하는 사법기관의 과도한 형량 판단에서 기인한 문제인지는 별도의 진지한 검토를 요한다는 점이다. 일찍이

23) 유사한 취지로, 권오성, 앞의 책(2022), 174-175쪽. 같은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폭행치사나 상해치사 등과 비교할 때 법정형의 문제가 크지 않다는 입장으로, 최정학, "중대재해처벌법", 노동법연구 제51호, 2021, 8쪽.

24) 헌재 2013. 7. 25. 2012헌바320.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대로, “법률의 집행에 오류가 있다고 하여 그 법률의 제정이 위헌이라고 보는 것은 헌법이 정한 권력분립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25] 만약 법원에 의한 형벌의 과잉 부과가 문제라면, 이것이 법 자체의 문제인지 법의 불합리한 해석·적용으로 인한 문제인지를 구별해야 하며, 전자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법의 결함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앞서도 보았듯이, 이 법은 벌금형을 두고 있고, 형량의 하한이 그리 높지는 않은 편이며, 범죄의 성격상 높은 결과반가치에 상응하는 상한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책임에 비례하지 않은 형벌의 부과 가능성이 법 자체로부터 예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조건이 된다.

Ⅲ. 평등원칙

1. 쟁점

형벌이 책임과의 비례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체계적 정당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 형벌이 체계정당성에 반한다는 것은, 죄질과 보호법익이 유사한 범죄에 대한 형벌과 비교할 때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현저히 상실한 것이 명백한 경우임을 뜻한다.[26]

이 법에 따른 처벌의 체계정당성 문제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평등원칙 위반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된다. 첫째, 산업안전보건법이 부과한 안전 및 보건조치의무를 따라야 할 주체로서 현장에서 재해의 발생을 막아야 할 구체적 책임을 지는 자가 이를 위반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이 법이 그 결과 발생에 그보다 덜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경영책임자등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은 형벌의 체계정당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둘째, 이 법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성요건을 취하면서도 형량을 가중한 것 역시 형벌의 체계정당성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

25) 헌재 2011. 3. 31. 2008헌바141등.

26) 헌재 2010. 11. 25. 2009헌바27.

한편, 이 법이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규정들을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 혹은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도록 한 것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2. 구체적 검토

가. 먼저 첫 번째 문제에 관하여 본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및 보건조치의무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작업수행과 관련하여 산업재해와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에서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이지만, 이 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는 기업 차원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그 이행을 관철함으로써 안전과 보건상의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두 법상 의무는 이처럼 입법목적과 의도, 그 내용에서 차이를 보인다.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 위반을 사고 발생에 즉각적인 원인을 제공한 목전의 요소로 볼 수도 있겠으나, 이 같은 개별 사고들을 기업 차원의 전반적이고 제도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의 미비 혹은 그러한 체계의 불충분한 실행에서 기인한 구조적 문제로 본다면, 사고 발생의 원인이 잠복해 있는 구조 자체를 개선하지 못하고 방치한 대목이 어쩌면 해당 사고를 초래한 더욱 근본적인 원인일 수도 있다. 이 법은 후자의 책임에 대한 보다 깊은 문제의식을 표현한 것이다.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에 있어서 헌법재판소가 입법자에 대해 인정해 온 폭넓은 재량에 비추어 볼 때, 이 같은 입법자의 판단이 불합리하고 재량범위를 일탈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한편, 이러한 입법자의 인식이 중대재해의 문제에 대한 형사정책적인 판단에 기초해 있다는 측면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중대재해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시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가 만족할만한 수준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입법자는 이 법을 통해 기존과는 다소 다른 관점에서 이 문제에 대한 또 다른 해법을 추구한 것이다. 종래 헌법재판소는, 형벌체계에서 법정형의 균형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실현되어야 할 기계적인 산술이 아니며, 범행의 위험성과 그 결과의 중대성 못지않게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인 판단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설명해 왔다.[27] 헌법재판소가 폭력행위의 근절이라는 일반예방적

인 효과를 추구한 입법자의 형사정책적인 판단을 존중해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 관한 부분의 합헌성을 지지한 것도 이러한 법리에 기초한 것이다. 이는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에 관한 입법자의 결정이 기본적으로 폭넓은 재량의 영역임을 인정해 온 그간의 입장과 궤를 같이한다. 앞서 서술했듯이, 이 법은 안전사고 등의 발생 원인을 기업 차원의 시스템 문제로 파악하고, 이것을 해당 문제의 더욱 근본적인 원인으로 상정해,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접근을 통해 중대재해의 발생을 줄이고, 이로써 근로자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는 정책적 판단에 입각해 있다. 이러한 판단에 기반해 있는 이 법이 실제로 애초에 기대한 결과를 산출할 수 있을 것인지는 현재로서 알기 힘들다. 어쩌면 훗날 이것이 오판이었음이 드러나 사필(史筆)의 냉혹한 평가 앞에 놓일 수도 있다. 그러나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현시점에서 입법자가 내린 이 같은 정책적 판단이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헌법상 민주주의 원리와 권력분립 원리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기본적으로 이를 존중하는 입장을 취해 왔다.

나. 헌법재판소는, 특별히 가중적인 구성요건 표지를 추가함이 없이 같은 구성요건에 대하여 법정형만을 높인 새로운 처벌조항을 신설할 경우, 그로 인해 어느 조항에 따라 기소할지가 오직 검사의 재량에만 의존하므로 법 적용에 대한 혼란이 있을 수 있고 또 법집행기관이 이러한 사정을 이용해 자백을 유도하거나 상소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도 있다고 보아, 형벌 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상실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입장이다.[28]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법에 따른 사업주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주의 안전 및 보건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이 사실상 같은 구성요건에 대하여 법정형만 높인 것에 해당한다면 이는 형벌의 체계 정당성에 반하여 평등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

중대재해의 예방이라는 유사한 목적을 향해 있는 두 법이다 보니, 그

27) 헌재 2015. 9. 24. 2014헌가1등.

28) 헌재 2015. 9. 24. 2014헌바154등.

의무의 내용에 일정한 중복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이 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 사업주에 대하여 부과한 의무는 전체적으로 그 내용과 성격이 같지 않다. 이 법은 안전·보건의 문제를 시스템과 구조, 조직문화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법 제4조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가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의무는 내용과 성격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이 법에 따른 사업주의 처벌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처벌이 같은 구성요건에 기초해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29]

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규정들의 적용범위를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정하고 있는데(제3조), 이와 관련하여 5인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과 5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달리 규율하는 것이 평등원칙 위반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30] 이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11조와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헌법재판소는 근로기준법을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만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그 규정의 일부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 못하게 한 것을 평등원칙 위반으로 보지 않았다.[31]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규율에 관해서는 입법재량이 인정되므로 그에 적용되는 심사기준은 완화된 기준인 점, 영세사업장의 열악한 현실을 고려하고 근로기준법의 법규범성을 실질적으로 관철하기 위한 것인 점,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다른 법규범들을 통해 법적 공백을 예방하고 있는 점, 국가는 법적 가치의 상향적 구현을 위한 제도의 단계적 개선방식을 시도할 수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이러한 이유들의

---

29) 두 법상 의무의 상이한 성격에 관해서는 권오성, 앞의 책(2022), 32쪽, 198쪽; 전형배, "중대재해처벌법의 해석상 쟁점", 노동법포럼 제34호, 노동법이론실무학회, 2021, 286-287쪽; 법무법인(유한) 바른, 앞의 책, 7쪽 이하, 32쪽. 반면, 두 법이 동일한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다는 입장으로는 송지용, 앞의 논문, 253-257쪽.

30) 대표적으로, 황동혁, 앞의 논문, 17쪽.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범위에서 배제한 것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을 개진한 바 있다. "인권위 "5인 미만 사업장까지도 중대재해처벌법 예외 없어야"", 매일경제, 2022. 1. 26.자 온라인 기사(https://www.mk.co.kr/news/society/10197894).

31) 헌재 2019. 4. 11. 2013헌바112; 헌재 2019. 4. 11. 2017헌마820.

주요 논지는 향후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의 평등위반 문제가 다루어질 때 마찬가지로 평등원칙 위반을 부인하는 논거로서 활용되리라고 보인다. 5인 이상인 사업장과 5인 미만인 사업장이 중대산업재해의 위험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구별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은 분명하나,[32] 근로기준법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보여준 입장은 이 문제에서 입법자의 정책적 판단을 존중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입법자의 정책적 판단이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과는 별개로, 이것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될 확률은 크지 않다고 예상된다.

Ⅳ. 명확성 원칙

1. 쟁점

이 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한다. 이 의무는 이 법이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것이다. 중대산업재해와 관련해서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명하고 있다(제4조).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중대재해의 결과가 발생할 때 형벌의 대상이 되므로, 이들 의무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의 요구를 충족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의무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형벌조항의 구성요건이 명확해야 그 조항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자신이 어떤 행위를 할 때 처벌되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 따르면,[33] 명확성 원칙이 입법자가 형벌조항의 모든 구성요건을 단순한

32) "논리적으로 볼 때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기업을 법적용에서 제외할 근거는 없다." 정진우, 앞의 책, 124쪽.

의미의 용어로 서술해야 함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형벌조항의 구성요건이 다소 광범위하여 일정부분 법관의 보충적 해석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 그 적용대상자가 누구이며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금지되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다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만약 이렇게 보지 않으면 형벌조항의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구체적이거나 정형화됨으로써 변화하는 다양한 사실관계를 제대로 규율할 수 없는 까닭이다.

2.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내용

가. 이 법 제4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일정부분 추상적인 내용으로 규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기존 헌법재판소의 입장에 비추어 볼 때 이 의무들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될 정도로 보이지는 않는다.

형벌조항에서 추상적 용어가 사용된다고 해서 반드시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가정의례의 참뜻”, “합리적인 범위 안”, “음란성 또는 잔인성을 조장할 우려”, “덕성”,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 “공익을 해할 목적”, “중요한 회의” 같이 추상성이 과도해 통상적인 해석방법으로는 그 의미를 명확히 알 수 없는 문언에 대해서는 명확성 원칙 위반이 선언되었다.[34] 그러나 “기타 부정한 방법”, “부당한 방법”, “선거운동”, “정당한 명령 또는 규칙”, “연간”, “도로의 구부러진 곳”, “상당한 이유”, “기타 추행”, “정당한 이유”, “궁박”,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처럼 추상적 용어가 사용되더라도 그것이 입법목적이나 다른 조항과의 관계 속에서 합리적인 해석의 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다면,[35] 혹은 사회변화에 따른 법규범의 적응력 확보를 위해 어느 정도의 추상성을 통한 규율이 불가피하다면,[36]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37]

---

33) 헌재 1998. 5. 28. 97헌바68.

34) 헌재 1998. 10. 15. 98헌마168; 헌재 2002. 2. 28. 99헌가8; 헌재 2005. 3. 31. 2004헌바29; 헌재 2010. 12. 28. 2009헌바157; 헌재 2011. 10. 25. 2010헌가29.

35) 헌재 2000. 2. 24. 99헌가4.

36) 헌재 2001. 6. 28. 99헌바3.

이 법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관한 규정은, 비록 폭넓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그간 명확성 원칙 위반으로 인정한 사례들과 비교할 때 그 정도로 불명확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우선, 종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된 바와 같은 고도의 추상적인 용어들이 사용되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부분적으로는 추상적으로 규정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이 법의 입법목적을 고려하면 그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또한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통해 그 의미를 구체화해 나가는 방식이 이 법에서는 통용되지 못할 만큼 이 법이 다른 법률에 비해 그 추상성이 과도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추상적 규율형식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그 같은 규율형식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 법에 따를 때,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경영책임자등은 해당 사업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따라서 그가 부담하는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는 포괄적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이들 의무를 최대한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이 바람직한 일을 하지 못했다 해서 반드시 위헌인 것은 아니다.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는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일일이 구체적, 서술적으로 열거하도록 하는 것은 입법 기술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측면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다양한 사실관계를 규율할 수 있는 법규범의 적응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정부분 망라적 의미를 갖는 내용으로 입법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해 왔다.[38] 규율영역의 특성상 일일이 문자화하기 힘든 경우에는 함축적인 표현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39]

---

37) 헌재 1989. 12. 22. 88헌가13; 헌재 1992. 2. 25. 89헌가104; 헌재 2001. 8. 30. 2000헌마121등; 헌재 1995. 5. 25. 91헌바20; 헌재 1998. 5. 28. 97헌바68; 헌재 2000. 2. 24. 99헌가4; 헌재 2001. 6. 28. 99헌바31; 헌재 2002. 6. 27. 2001헌바70; 헌재 2005. 3. 31. 2003헌바12; 헌재 2006. 7. 27. 2005헌바19.

38) 헌재 2001. 6. 28. 99헌바31; 헌재 2012. 2. 23. 2011헌가13 참조.

39)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1호와 제4호에 관해서는 그 구체적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과는 다소 무관하지만, 대통령령의 내용을 통해 법률 내용의 추상성을 다소 완화해 나갈 수 있다고도 보인다.

나. 다음으로, 헌법재판소는 명확성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규범이 일반국민들을 수범자로 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 집단을 수범자로 한 것인지를 고려해 왔다. 특히 특정 집단이 수범자로 된 경우, 그 특정 집단이 해당 법률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상당한 전문적 식견이나 경험을 가지거나 그러한 식견이나 경험을 쉽게 확보·이용할 수 있다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이 다소간 완화된 형태로 적용된다는 것이다.[40] 예컨대, 헌법재판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의 '노동조합 지배·개입 행위 금지'는 수범자가 사용자에 한정되고, 일상적으로 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자는 예측가능성이 더 크다는 이유로 명확성의 정도가 완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41] 마찬가지로, 변호사,[42] 보험업자,[43] 군인,[44] 의료인,[45] 사법경찰관리,[46] 일정한 요건 하에서 환매권을 취득한 환매권자,[47] 사회복지법인 관계자,[48] 금융투자업자[49] 등에게 적용되는 조항 역시 수범자의 전문성이나 직업의식, 경험에 힘입어 일반 국민에게 적용될 때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더 큰 예측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판단해 왔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에 따르면, 수범자가 단지 일반 국민이 아니라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지닌 특정 집단에 속하는지 여부에 더하여, 그 수범자가 일반 국민에 비해 법률전문가들의 도움을 용이하게 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도 고려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의무에 관한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사했는데, 법률의 명확성 원칙 위반 여부 심사에서 수범자의 지위가 고려됨을 다음과 같이 설시했다.

---

40) 헌재 2007. 7. 26. 2006헌가9.
41) 헌재 2022. 5. 26. 2019헌바341.
42) 헌재 2021. 10. 28. 2020헌바488.
43) 헌재 2002. 1. 31. 2000헌가8.
44) 헌재 2010. 10. 28. 2008헌마638.
45) 헌재 2012. 3. 29. 2010헌바83.
46) 헌재 2007. 3. 29. 2006헌바69.
47) 헌재 2005. 4. 28. 2002헌가25.
48) 헌재 2006. 7. 27. 2005헌바66.
49) 헌재 2017. 5. 25. 2014헌바459.

“이 사건 법률조항의 수범자는 법을 숙지하고 집행하여야 하는 공무원 등으로 한정되어 있고, 특히 대통령의 경우에는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그리고 산하 공무원조직의 도움과 자문을 통해 이러한 내용의 파악이나 예측에 더욱 유리한 지위에 있으므로 일반 국민이 수범자인 경우와는 달리 그 명확성의 요구가 완화될 수 있다.”[50] 같은 맥락에서, “애매한 법문을 자신이 해석할 수 없을 때 … 전문가의 조언이나 전문서적 등을 참고하여 자기의 책임하에 행동 방향을 잡을 수 있고 그러한 결론이 보편성을 띠어 대부분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면 명확성을 인정할 수 있고, 법률전문가 등의 조언을 구하여도 자신의 행위가 금지되는 것인지 아닌지를 도저히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면 그 규정은 불명확하여 무효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결정도 있다.[51]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관련하여 본다면, 이 의무의 수범자는 일반 국민이 아니라 사업주 혹은 경영책임자등이다. 이들은 해당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을 지는 자들이므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다른 사람들보다 더 깊은 인식과 이해를 보유하고 있을 수 있다. 또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일반 국민 혹은 근로자와 비교할 때 법률전문가들로부터 폭넓은 도움과 조언을 얻을 수 있는 지위에 있다. 이러한 측면 역시 이 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내용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될 여지를 줄여갈 수 있는 조건이 된다.

가령, 인권옹호에 관한 검사의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139조에 관한 사례를[52] 살펴보자. 헌법재판소는 이

50) 헌재 2008. 1. 17. 2007헌마700. 이 사건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관한 사건이 아니나, 법률의 명확성원칙 심사에서 수범자의 지위를 고려할 수 있다는 취지는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51) 헌재 2005. 3. 31. 2003헌바12. 미국 연방대법원의 명확성원칙 심사가 실질적으로 법전문가에게 명확한지 여부로 이루어지는 근래의 흐름을 분석하고, 그 같은 법전문가 기준을 받아들일 경우 일반인을 기준으로 하되 법전문가의 도움을 전제로 판단한다는 취지의 설시가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전종익, “미국 헌법상 명확성 원칙(void for vagueness) 심사”, 서울대학교 법학 제50권 제1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참조.

52) 헌재 2007. 3. 29. 2006헌바69.

사건에서 위 형법 조항에 규정된 '인권'의 의미가 무엇인지, 옹호해야 할 인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관하여 다소 간의 불명확함이 존재함을 인정했다. 그러나 우선, 입법자가 범죄 수사 과정에서 침해되지 않아야 할 인권의 내용을 일일이 열거하고 인권옹호에 관한 검사의 명령 유형을 구체적으로 한정하는 것은 입법 기술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았다. 어느 정도의 추상적 규율이 불가피하다는 측면에 수긍을 표한 것이다. 이어서 이 범죄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그 적용 대상의 성격을 고려해 인권 및 검사 명령의 의미를 구체화할 수 있다고 보았고,[53]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수사업무와 관련하여 인권을 존중할 의무를 부담하는 사법경찰리가 이 형법 조항의 피적용자임을 지적한 다음, 해당 법률조항에 내재한 약간의 불명확성은 법관의 통상적인 해석 작용에 의하여 충분히 보완될 수 있음을 들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54] 이 같은 판단방식은 이 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대해서도 통용될 수 있다.

다. 헌법재판소가 보여준 이상의 입장에서 본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제4

53) "여기서 말하는 '인권'은 범죄수사과정에서 사법경찰관리에 의하여 침해되기 쉬운 인권, 주로 헌법 제12조에 의한 국민의 신체의 자유, 이를 테면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금·압수·수색·심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법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아니할 권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고 할 것이다. 인권의 내용을 이렇게 볼 때 이 사건 검사의 명령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에 의해 침해될 수 있는 인신 구속 및 체포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둘러싼 피의자, 참고인,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인권, 그 중 주로 그들의 신체적 인권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고 이를 위해 필요하고도 밀접 불가분의 관련성 있는 검사의 명령'이라고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등 얼마든지 그 의미를 명확히 하고 객관화할 수가 있을 것이다."

54) 이 결정의 반대의견(재판관 이공현)은, '인권' 개념이 일반적인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는 희소한 표현이고 그 의미를 범위를 특정하기 힘든 추상적인 표현인 점, 해당 조항이 인권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않고 있고, 인권옹호에 관한 검사의 명령에 대하여 구체적인 유형을 설시하거나 그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않아 인권의 의미가 무엇이며 검사의 다양한 업무에 관한 명령 중에서 인권옹호에 관한 명령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점, 극단적으로는 위 조항이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모든 명령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해석될 가능성이 있는 점에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조 제1항의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같은 표현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1) ‘실질적’이라는 표현은 헌법재판소가 불명확하다고 주장되는 표현의 의미를 해설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가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중 ‘(범인이) 받은’이라는 표현의 불명확성이 다투어진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받은’의 의미는 ‘실질적으로 취득한’의 의미이므로 불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55] 또, 국적법 제14조 중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 부분에 관해서도, ‘주소’를 ‘실질적인 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로 풀이하여 그 의미가 명확하다고 보았다.[56]

‘지배’, ‘운영’, ‘관리’ 등의 표현도 실정법상 드물지 않게 등장하는 표현이며,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표현이 사용된 법조문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57] 물론, 뒤에서 보겠지만, 동일한 표현이 사용된다고 해도 그것이 사용되는 맥락과 조건에 따라 명확성 원칙 위반 여부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감안하고 보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은 그 문언적 표현 자체로 명확성 원칙 위반에 이를 정도로 추상적이거나 다의적이라고 판단되지 않는다.

2) 한편, 헌법재판소의 선례에 비추어 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이 법 제4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서 규정하는 “관계 법령”이라는 표현이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중 하나로서, 제3호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를, 제4호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대지 및

55) 헌재 2009. 4. 30. 2008헌바55.

56) 헌재 2023. 2. 23. 2020헌바603.

5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의 ‘노동조합 지배·개입 행위 금지’ 부분(헌재 2022. 5. 26. 2019헌바34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의2호 및 제2조 제8호 중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 방해’ 부분(헌재 2012. 6. 27. 2011헌마28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3조 중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부분(헌재 2003. 4. 24. 2002헌바59) 등.

건축설비를 항상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관계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건축법 조항에 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관계 법령"이라는 표현이 불명확하다고 결정한 헌재 1997. 9. 25. 96헌가16 결정과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위 결정에서, "이 사건 법률 규정은 일정한 자가 건축물 등을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하지 아니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관계법령의 구체적인 범위는 물론 그 범위를 한정할 수 있는 기준에 관하여조차 아무런 규정도 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하면서 위 표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58]

"관계 법령"이라는 표현의 동일성을 고려할 때, 위 판례의 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상 "관계 법령"에서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59] 물론 그러할 가능성도 없지 않지만, 필자는 다른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편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문언이 동일하다고 해서 반드시 같은 결론으로 귀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해당 조항들의 전체적 맥락이 다르다면,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 문언이 유사하지만, 명확성 여부의 판단이 상이했던 헌법재판소 판례들이 존재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예컨대, 헌법재판소는 "미풍양속을 해하는"이라는 동일한 표현과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1항은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본 반면,[60]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5호는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61] 헌법재판소가 그 차이의 연유를 밝히지 않아 정확히 알기는 힘들지만, 아마도 전자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조항이었고, 후자는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조항이었다는 측면, 혹은 해당 조항을 둘러싼 전체적인 조문체계가 다르다는 측면 등 양자의 상이한 맥락과 조건이 결

58) 헌재 1997. 9. 25. 96헌가16.

59) 위 96헌가16 결정을 근거로 하여 "관계 법령"이라는 표현의 불명확성 문제를 지적하는 문헌으로 송지용, 앞의 논문, 245쪽 이하. 한편, 대검찰청, 중대재해처벌법 벌칙해설, 2022, 219쪽의 주 89 및 이근우, "중대산업재해 관련 법적용과 수사의 쟁점",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의 수사와 법 적용에서 쟁점,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형사법센터 세미나, 2022, 7쪽 등도 "관계 법령"이라는 표현의 불명확성 문제를 제기한다.

60) 헌재 2002. 6. 27. 99헌마480.

61) 헌재 2008. 4. 24. 2006헌바60등.

론상의 차이를 만드는 데 기여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렇다면, 위 96헌가16 결정의 심판대상조항이었던 건축법 조항과 중대재해처벌법 조항에서 등장하는 "관계 법령"이 어떻게 상이한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양자는 규정형식의 차이로 인해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위 96헌가16 결정의 심판대상조항은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대지 및 건축설비를 항상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이 조항을 준수하려면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이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관계법령이 어떤 법령인지를 알아야 한다. 따라서 수범자로서는 관계법령이 어떤 법령인지를 알지 못하면 이 조항을 준수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된다. 반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인데,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제3호),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제4호)에서 보듯이 "관계 법령"이라는 표현은 이 조치의 종류를 규정하는 용도로 사용된 것이다. 결국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입장에서는 위 조치를 준수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데, 설령 "관계 법령"이 어떤 법령을 말하는 것인지를 정확히 알기 힘들다고 하더라도, 위 조치의 의미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이 요구하는 조치를 이행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제3호와 제4호의 규정을 본다면,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제3호)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로서 대통령령이 구체화한 조치'(제4호)는 "관계 법령"의 모호함에 크게 영향을 받음이 없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그 의미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규율형식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양자는 수범자의 성격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는데, 이 역시 예측가능성의 차이를 만들어 명확성 원칙 위반 여부의 결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원인이 된다. 위 건축법 조항은 일반인을 수범자로 하는 조항이라는 점에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 일정한 전문가 집단에 적용되는 규범이라 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과는 차이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위 96헌가16 결정에서 “관계 법령” 부분의 불명확성을 지적하면서, 이 부분이 전문가가 아니라 일반인에게 적용된다는 측면에서 위헌성이 더 크다고 설시했다. 그와 동시에, 헌법재판소는 건축법의 다른 부분에서도 “관계 법령”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지만, 그 규정들은 설계자, 공사시공자 등 건축전문가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건축관계법령에 대하여 문외한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될 때에 비해 그 위헌성이 덜할 수 있다고 보았다.[62]

물론,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의미를 법률로써 더 구체적으로 규율한다면 더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입법기술적으로 어느 정도로 가능한 일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 위 96헌가16 결정에 의해 “관계 법령”이라는 표현이 위헌으로 판단된 후, 입법자는 1997. 12. 13. 법률 제5450호로 개정된 건축법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 부분을 “제30조 내지 제59조의3의 규정”이라는 문구로 수정했다. 불명확성의 해소를 위한 입법적 개선의 핵심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 표현을 삭제하는 것이었다. 이는, 한편으로는, 입법자가 종전 조항의 ‘이 법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구체화하는 것만으로도 건축법상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겠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관계 법령”이라는 표현을 법률적 차원에서 구체화하는 일이 입법기술적으로 어렵고 까다로운 일임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다.[63]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범위가 넓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더욱 그렇다.[64]

---

62) 헌재 1997. 9. 25. 96헌가16(“건축법에는 이 사건 법률규정 이외에도 … “이 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위 규정들은 설계자, 공사시공자, 공사감리자, 관계전문기술자 등 건축전문가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음에 반하여, 이 사건 법률규정은 그 적용대상이 건축이나 건축관계법령에 대하여 문외한이라고 할 수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라는 점에서 위 규정들에 비하여 더욱 위헌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63) 이러한 어려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서도 확인되는데, 이 법의 시행령은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으로 풀이하고 있이서, 법률의 문언적인 의미를 유의미하게 구체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상황이다. 정진우, 앞의 책, 138-139쪽의 주 147; 송지용, 앞의 논문, 245쪽.

이러한 상황에 더하여,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의미를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사업장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그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법령 전반으로 이해함으로써[65]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4호가 규정하는 조치의 의미를 파악한다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3. 기준으로서의 치료 기간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는 중대재해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하고, 각각의 정의를 규정한다. 여기서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나 부상자, 질병자의 발생을 필요로 하며, 부상자와 질병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간 이상의 치료를 요구한다. 가령, 부상자의 발생으로 중대산업재해가 되기 위해서는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일정한 기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중대재해를 인정할 때 진단서를 발급하는 의사의 일방적 판단으로 중대재해인지 여부가 결정된다는 문제가 지적된다. 소위 ‘나이롱환자’와 같이 부상의 존재와 정도에 관하여 진실하지 못한 환자를 엄격히 가려내기 힘든 상황임을 고려할 때, 중대재해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이 객관적으로 담보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중대재해의 정의를 규정한 조항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66]

그러나 법률의 명확성 문제와 법률의 적용 문제는 구분된다. 법률의 의미가 명확해도 그 법률의 적용양상에 모호함이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는 법률조항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문제라기보다는 법률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문제이며,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

64) 법률만 놓고 보더라도 약 30개에 이른다는 지적으로 정진우, 앞의 책, 139쪽. 고용노동부는 중대산업재해와 관련한 안전·보건 관계 법령들로 산업안전보건법, 광산안전법, 원자력안전법, 항공안전법, 선박안전법, 폐기물관리법, 선원법 등을 예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앞의 책, 104쪽.

65) 고용노동부, 앞의 책, 98쪽.

66) 송인택 외 4인, 앞의 책, 77-79쪽.

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67]

이 법과 관련하여 본다면, 이 법은 중대재해의 의미를 규정하면서 일정한 치료기간을 필요로 하는 부상자나 질병자의 존재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특정한 기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이나 질병이라는 의미는 그 자체로 명확한 까닭이다. 다만, 이 법이 그 같은 기간을 요구하는 이유는 부상과 질병의 심각성을 판단하기 위함일 것인데, 그 판단의 객관성이 보증되지 않는다면 중대재해인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는 법률조항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라기보다, 법률이 애초의 취지대로 정확히 적용되지 않는 상황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정확한 집행을 위해 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지적과 법률의 명확성 원칙 위반은 개념적으로 구분된다.

Ⅴ. 결론

이상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하여 제기되고 있는 주요한 위헌 여부 문제들을 살펴보았다. 위헌성이 크다고 주장되는 대목들이 존재하지만, 그간 헌법재판소가 선고해 온 판례들의 전반적인 입장에 비추어 판단해 볼 때 위헌성이 명백하거나 매우 짙다고 확실하게 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위헌 여부의 문제와는 별개로, 이 법이 정말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예정하는지, 우리 사회에서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지, 법의 실효성 측면에서 법의 적용범위를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한정한 것이 합당한지 등에 관한 형사적 혹은 정책적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이 훼손되지 않는 한, 법률을 더욱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노력은 그 자체로 정당하고 헌법상 법치국가 이념에도 부합한다. 그것이 형벌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법률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중대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우리

67) 헌재 2003. 2. 27. 2002헌바4; 헌재 2017. 7. 27. 2015헌바450; 헌재 2017. 9. 28. 2016헌바376.

사회의 논의가 이 법의 시행을 이유로, 혹은 앞으로 있을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존재를 이유로 종결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일 것이다.

(논문투고일: 2023.8.25., 심사개시일: 2023.9.6., 게재확정일: 2023.9.27.)

이황희

중대재해, 책임과 형벌의 비례성, 평등원칙, 명확성 원칙, 입법재량

【참 고 문 헌】

Ⅰ. 단행본

고용노동부, 해설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2021.
권오성, 중대재해처벌법의 체계, 도서출판 새빛, 2022.
대검찰청, 중대재해처벌법 벌칙해설, 2022.
대법원 양형위원회, 2021년 양형기준, 2021.
법무법인(유한) 바른, 중대재해처벌법 연구, 법문사, 2022.
송인택 외 4인,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박영사, 2021.
정진우, 중대재해처벌법, 중앙경제, 2022.

Ⅱ. 논문

권오성, “중대재해처벌법 과연 위헌인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평가와 과제 토론회 자료집, 2023.
김민기, “중대재해처벌법의 합헌성”, 권창영 외, 중대재해처벌법 연구Ⅰ, 법문사, 2022.
김장식, “중대산업재해로 인한 형사책임”, 월간노동법률 제358호, 2021. 3.
김재윤, “중대재해처벌법상 치사상죄 처벌의 허점(legal loophole)인가?에 대한 토론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의 수사와 법 적용에서 쟁점,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형사법센터 세미나, 2022.
송지용,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 검토”,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74호, 대검찰청, 2022.
이근우, “중대산업재해 관련 법적용과 수사의 쟁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의 수사와 법 적용에서 쟁점,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형사법센터 세미나, 2022.
이영주・이승길,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 여부에 관한 소고”, 사회법연구 제49호, 한국사회법학회, 2023.
전종익, “미국 헌법상 명확성 원칙(void for vagueness) 심사”, 서울대학교

법학 제50권 제1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전형배, “중대재해처벌법의 해석상 쟁점”, 노동법포럼 제34호, 노동법이론실무학회, 2021.
황동혁,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헌법적 고찰”, 법학연구 제63권 제2호, 통권 112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Abstract

Constitutional Review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Hwanghee Lee

In January 2021, Korean society, which has witnessed numerous safety accidents, enacted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to prevent serious accidents and safeguard the workers' lives and physical well-being. This legislation has elicited both positive and negative responses, with one of the criticisms being its potential unconstitutional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criticisms against the Act, especially the argument of its unconstitutionality. The examination of the unconstitutionality arguments is based on the jurisprudenc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s it currently stands and the rulings that have been applied in previous cases.

First, concerning liability, the legislature's discretion in determining the type and scope of statutory penalties is broadly acknowledged. The Act allows for fines and imprisonment for no less than one year, and the minimum penalty is not unreasonably high, allowing judges to consider the severity of the offense, responsibility and moral blameworthiness, and to impose an appropriate punishment. Therefore, the Act does not violate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between responsibility and punishment.

Furthermore, the obligation to ensure safety and health under the Act and the obligation to implement safety and health measures under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differ in content and nature. Therefore the more severe penalty for violating the obligation under the Act does not necessarily constitute unreasonable discrimination that violates the principle of equality.

Finally, the principle of clarity is at issue, and although the Act is somewhat abstract, it does not appear to be as unclear as the provisions declar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as unconstitutional. Additionally, it should be noted that judges can provide supplementary interpretation to clarify the Act's meaning, and the Act's perpetrators are limited to a specific group of people rather than the general population. Considering these points together, the Act's provisions are not unconstitutionally vague.

Despite the various constitutional arguments raised against the Act, we do not believe that the Act crosses the line of constitutionality and becomes unconstitutional when reviewed in light of the accumulated precedent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Hwanghee Lee

Serious Accident,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between responsibility and punishment, Principle of equality, Principle of clarity(vagueness doctrine), Legislative discretion